

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35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1.

발 의 자 : 김은영 의원

1. 수정이유

-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재원의 공동 분담 근거 신설 (안 제3조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위하여” 를 “위하여 경기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와 하남시가 협력하여,” 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저소득 청년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위하여 경기도 (이하 “도”라 한다)와 하남시가 협력하여,</u> -----.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「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</p>	<p>제3조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<u>하남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.</u></p>

